

< 계 약 서 >

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함)과 김수연 (이하 “기간제노동자”이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구급상황관리센터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사업(업무)내용 등 근로조건

- 가. 계약기간 : 2022. 1. 29. ~ 2022. 2. 2.
 - 나. 근무장소 :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
 - 다. 근무형태 : 일일 9시간(09:00~19:00) (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미포함)
 - 라. 업무내용 : 의료상담 및 병·의원 약국 안내 등
- * 단,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2. 임금 등 급여조건

- 가. 급여지급 :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 적용
- 나. 가산 임금률(연장, 야간, 휴일 노동시) : 시간당 시간급의 50% 가산
- 다. 지급방법 : “기간제노동자” 예금통장에 매월 급여일에 계좌 입금
- 라. 보험 :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
- 마. 기타사항은 “시·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”에 의거 시행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함.

3. 계약사항

- 가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“소장”과 상호 협의 하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 한다.
- 나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“소장”이 요청한 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(미 이행시 자동해지로 간주한다.)
- 다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취업, 병가 등 근로계약을 미 이행 사유 발생시 “소장”에게 15일 이전에 통보·계약해지하여야 한다.
- 라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근무기간 확정시 「근로계약서」을 작성하고 제반 서류를 작성·제출하여 근무를 시행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에 대해 차후 이상 발견 시 계약을 해지함.
- 마. “기간제노동자”와 “소장”은 계약기간 단축에 대해 사전 안내를 받고 협의하였음.
- 바. 기타사항은 “기간제노동자”과 “소장”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.

2022년 1 월 27 일

(서울종합방재센터)

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
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(인)



(기간제노동자)

성명 : 김수연 (서명 또는 날인)

주민등록번호 : 980803-2156014 (☎ : 010-6822 8608)

< 계약서 >

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함)과 ~~간접노동자~~ (이하 “기간제노동자”이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구급상황관리센터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사업(업무)내용 등 근로조건

- 가. 계약기간 : 2022. 1. 29. ~ 2022. 2. 2.
 - 나. 근무장소 :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
 - 다. 근무형태 : 일일 9시간(09:00~19:00) (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미포함)
 - 라. 업무내용 : 의료상담 및 병·의원 약국 안내 등
- * 단,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2. 임금 등 급여조건

- 가. 급여지급 :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 적용
- 나. 가산 임금률(연장, 야간, 휴일 노동시) : 시간당 시간급의 50% 가산
- 다. 지급방법 : “기간제노동자” 예금통장에 매월 급여일에 계좌 입금
- 라. 보험 :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
- 마. 기타사항은 “시·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”에 의거 시행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함.

3. 계약사항

- 가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“소장”과 상호 협의 하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 한다.
- 나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“소장”이 요청한 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(미 이행시 자동해지로 간주한다.)
- 다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취업, 병가 등 근로계약을 미 이행 사유 발생시 “소장”에게 15일 이전에 통보·계약해지하여야 한다.
- 라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근무기간 확정시 「근로계약서」 을 작성하고 제반 서류를 작성·제출하여 근무를 시행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에 대해 차후 이상 발견 시 계약을 해지함.
- 마. “기간제노동자”와 “소장”은 계약기간 단축에 대해 사전 안내를 받고 협의하였음.
- 바. 기타사항은 “기간제노동자”과 “소장”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.

2022년 1 월 27 일

(서울종합방재센터)

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
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(인)



(기간제노동자)

성명 : 김민수 (서명 또는 날인)

주민등록번호 : 92101/261111 (☎ : 010-2299-6070)

< 계 약 서 >

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함)과 김재운 (이하 “기간제노동자”이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구급상황관리센터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사업(업무)내용 등 근로조건

- 가. 계약기간 : 2022. 1. 29. ~ 2022. 2. 2.
 - 나. 근무장소 :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
 - 다. 근무형태 : 일일 9시간(09:00~19:00) (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미포함)
 - 라. 업무내용 : 의료상담 및 병·의원 약국 안내 등
- * 단,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2. 임금 등 급여조건

- 가. 급여지급 :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 적용
- 나. 가산 임금률(연장, 야간, 휴일 노동시) : 시간당 시간급의 50% 가산
- 다. 지급방법 : “기간제노동자” 예금통장에 매월 급여일에 계좌 입금
- 라. 보험 :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
- 마. 기타사항은 “시·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”에 의거 시행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함.

3. 계약사항

- 가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“소장”과 상호 협의 하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 한다.
- 나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“소장”이 요청한 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(미 이행시 자동해지로 간주한다.)
- 다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취업, 병가 등 근로계약을 미 이행 사유 발생시 “소장”에게 15일 이전에 통보·계약해지하여야 한다.
- 라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근무기간 확정시 「근로계약서」을 작성하고 제반 서류를 작성·제출하여 근무를 시행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에 대해 차후 이상 발견 시 계약을 해지함.
- 마. “기간제노동자”와 “소장”은 계약기간 단축에 대해 사전 안내를 받고 협의하였음.
- 바. 기타사항은 “기간제노동자”과 “소장”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.

2022년 1 월 27 일

(서울종합방재센터)

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
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(인)



(기간제노동자)

성명 : 김재운 (서명/또는 빌인)

주민등록번호 : 991104-2476821 (☎ : 010-6207-7840)

< 계 약 서 >

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함)과 ㄱ, ㄴ, ㅁ (이하 “기간제노동자”이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구급상황관리센터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사업(업무)내용 등 근로조건

- 가. 계약기간 : 2022. 1. 29. ~ 2022. 2. 2.
 - 나. 근무장소 :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
 - 다. 근무형태 : 일일 9시간(09:00~19:00) (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미포함)
 - 라. 업무내용 : 의료상담 및 병·의원 약국 안내 등
- * 단,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2. 임금 등 급여조건

- 가. 급여지급 :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 적용
- 나. 가산 임금률(연장, 야간, 휴일 노동시) : 시간당 시간급의 50% 가산
- 다. 지급방법 : “기간제노동자” 예금통장에 매월 급여일에 계좌 입금
- 라. 보험 :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
- 마. 기타사항은 “시·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”에 의거 시행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함.

3. 계약사항

- 가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“소장”과 상호 협의 하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 한다.
- 나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“소장”이 요청한 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(미 이행시 자동해지로 간주한다.)
- 다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취업, 병가 등 근로계약을 미 이행 사유 발생시 “소장”에게 15일 이전에 통보·계약해지하여야 한다.
- 라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근무기간 확정시 「근로계약서」 을 작성하고 제반 서류를 작성·제출하여 근무를 시행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에 대해 차후 이상 발견 시 계약을 해지함.
- 마. “기간제노동자”와 “소장”은 계약기간 단축에 대해 사전 안내를 받고 협의하였음.
- 바. 기타사항은 “기간제노동자”과 “소장”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.

2022년 1 월 27 일

(서울종합방재센터)
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
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(인)



(기간제노동자)

성명 : ㄱ, ㄴ, ㅁ (서명 또는 날인)

주민등록번호 : 95125 103101 (☎ : 010 6718 3290)

< 계 약 서 >

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함)과 107 정현 (이하 “기간제노동자”이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구급상황관리센터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사업(업무)내용 등 근로조건

- 가. 계약기간 : 2022. 1. 29. ~ 2022. 2. 2.
 - 나. 근무장소 :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
 - 다. 근무형태 : 일일 9시간(09:00~19:00) (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미포함)
 - 라. 업무내용 : 의료상담 및 병·의원 약국 안내 등
- * 단,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2. 임금 등 급여조건

- 가. 급여지급 :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 적용
- 나. 가산 임금률(연장, 야간, 휴일 노동시) : 시간당 시간급의 50% 가산
- 다. 지급방법 : “기간제노동자” 예금통장에 매월 급여일에 계좌 입금
- 라. 보험 :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
- 마. 기타사항은 “시·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”에 의거 시행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함.

3. 계약사항

- 가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“소장”과 상호 협의 하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 한다.
- 나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“소장”이 요청한 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(미 이행시 자동해지로 간주한다.)
- 다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취업, 병가 등 근로계약을 미 이행 사유 발생시 “소장”에게 15일 이전에 통보·계약해지하여야 한다.
- 라. “기간제노동자”는 근무기간 확정시 「근로계약서」을 작성하고 제반 서류를 작성·제출하여 근무를 시행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에 대해 차후 이상 발견 시 계약을 해지함.
- 마. “기간제노동자”와 “소장”은 계약기간 단축에 대해 사전 안내를 받고 협의하였음.
- 바. 기타사항은 “기간제노동자”과 “소장”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.

2022년 1 월 27 일

(서울종합방재센터)

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
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(인)



(기간제노동자)

성명 : 정현 (서명 또는 날인)

주민등록번호 : 000326 - 400611 (☎ : 010-9111-4126)